부천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4월 22일(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1997년 4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1997년 5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95. 12. 29. 법률 제5113호) 및 동법시행령(96. 6. 29. 대통령령 제15097호)의 개정으로 부천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적용을 위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에 관한 규정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최인용)

○ 동 조례의 폐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60호
의결년월일	97. 5. 7. (제53회)

제출년월일 : 1997. 4. 2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95. 12. 29. 법률 제511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96. 6. 29. 대통령령 제15097호)으로 부천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적용을 위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에 관한 규정이 동법 제2조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폐지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부천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 전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제13조, 제21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 제35조

부천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